

1. 예산 총 칙

2018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43,955,649	13,318,669
일반회계	399,928,438	11,997,853
특별회계	44,027,211	1,320,816
기타특별회계	44,027,211	1,320,81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364,924	130,948
수질개선특별회계	13,453,604	403,60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19,647	18,589
농업소득기금특별회계	9,438,323	283,150
자활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959,507	28,785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467,719	74,032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162,138	4,86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775,588	53,268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4,962,350	148,871
소수력발전사업 특별회계	66,383	1,991
공무원아파트특별회계	4,982,807	149,484
원외탕전원특별회계	774,221	23,227

제 2 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의 총액은 17,325,545천원이며, 재해·재난 예비비 13,825,545천원을 포함한다.

제 4 조 2018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0,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